

[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]  
검 토 보 고

## 1. 검토경과

### 가. 제출일자

- 제 출 일 : 2004. 1. 7.

-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4. 1. 9.

다. 의안번호 : 제 2004 - 6호

## 2.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

### 가. 제정이유

-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시책에 따른 수거체계 구축과 처리 수수료 부과·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

### 나. 주요골자

-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지역 지정(안 제4조)

- 대상지역은 군수가 따로 정함
-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“별표1”과 같음
- 수집·운반·재활용기 및 수거일, 배출장소 등은 따로 정함

-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방법(안 제5조)

-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처리도 가능 함
- 감량의무사업자는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고토록 함

- 감량의무사업자가 자가 처리하는 경우 건조처리 시에는 수분함량을 25% 미만으로 발효(퇴비화, 사료화 등)시에는 40% 미만으로 함
-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, 재질 규정(안 제9조)
  -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준함
- 조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: “별표2”와 같음

### 3. 검토의견

- 제6조 (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등) -----37P
  -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, 폐기물 재활용신고자, 또는 폐기물 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·퇴비 등으로 재활용토록 되어있는데 우리군에서 해당되는 재활용 관련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수거 및 운반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- 별표2 과태료 부과 기준 -----44P
  -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 산정 기준 설명 필요
-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제 및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 4. 참 고

- 폐기물관리법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
- “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”준칙 시달 (경남도 환경 67500-12493호)
- “과태료부과·징수업무에관한규정” 개정 (환관11060-11817)